



제 42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만희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07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 재 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전화 예찰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 ..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만회의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5. 4. 22.

다. 회 부 일 : 2025. 4.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는 가축전염병 조기 발견을 위해 2011년부터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을 정부(농림축산식품부)에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으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9조제6항의 방역본부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에는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이 빠져있어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며 현재는 가축 질병별 긴급행동지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근거하여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또한, 방역본부는 가축전염병 국내 유입을 방지하고자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입국 신고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받아 주기적으로 가

축전염병 전화 예찰을 시행하고 있으나, 전화 예찰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취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방역본부에서 해외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다녀온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에 필요한 해외여행자 입국 신고 내용의 수집·취급 및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전화 예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7항 및 제8항).

나. 방역본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 확인 등 예찰 및 신고·상담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함(안 제9조제6항제3호의3 신설).

Ⅲ. 검토의견

1.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전화 예찰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 보완

현행법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여금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사람의 입국신고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여금 입국신고 내용을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의 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방역본부의 장으로 하여금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안 제5조)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의 소관 사업에 사육 중 가축에 대한 예찰 및 신고·상담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제5조(가축의 소유자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
① ~ ⑥ (생략)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은 사람의 입국신고 내용을 해당 <u>시장·군수·구청장</u>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 ----- ----- ----- <u>시장·군수·구청장 및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1)의 장(이하 “방역본부장”이라 한다)</u> ----- -----.

현행	개정안
⑧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해당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할 것을 명하거나 직접 <u>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u> ⑨·⑩ (생략)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 ⑤ (생략) ⑥ 방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3의2. (생략) <u><신설></u> 4. ~ 6. (생략) ⑦ ~ ⑪ (생략)	⑧ ----- ----- ----- ----- ----- ----- ----직접 <u>소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방역본부장은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u> ⑨·⑩ (현행과 같음) 제9조(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u>가축의 소유자등이 사육 중인 가축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 확인 등 예찰 및 신고·상담 업무</u> 4. ~ 6. (현행과 같음) ⑦ ~ ⑪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 →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축위생방역 지원본부”로 자구 수정 필요

현재 방역본부는 ①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자에 대해 가축전염병 발생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과,²⁾ ② 국내 축산농가에 대하여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³⁾ 전화 예찰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동 전화 예찰 사업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가축 질병별 긴급행동지침(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에 근거하여 동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바,⁴⁾

2) 전화예찰 사업 중 ‘AI 보이스봇 사업’

☐ 추진대상 : 해외여행자 특별예찰

- 축산관계자(가축의 소유자 및 수의사, 사료판매업자 등)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농장출입 여·부 및 소독실시 여·부 등을 문의하는 예찰

☐ 추진실적

- 추진기간(누적) : '24. 3. 25. ~ '24. 12. 31.
- 응답률 : 77.6%(49,683명 발송, 38,536명 응답)

(단위 : 건, 기준 : 2024. 12. 31.)

구분	합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발송	49,683	13,139	3,978	3,380	6,871	8,521	3,868	8,536	503	887
응답	38,536	9,771	3,109	2,567	5,515	6,843	2,791	6,914	382	644
응답률	77.6%	74.4%	78.2%	75.9%	80.3%	80.3%	72.2%	81.0%	75.9%	72.6%

3) 전화예찰 사업

☐ 전화예찰 사업 개요

- 축산농가 상담·예찰센터는 2011년부터 가축전염병 조기검색 및 방역수칙 홍보 등을 위해 축산농가에게 전화(알림톡)로 예찰, 상담, 예찰관련 지원(행정)업무 등을 추진
- ※ 사업추진 근거 : 2025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농식품부 지침) 제3장 가축위생방역지원 사업
- 전화(알림톡) 예찰은 전국 9개 도본부 및 43개 사무소에서 203명이 축·품종 및 사육규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시 상황 전달, 조사 등의 조치로 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

☐ 전화예찰 사업 대상

- 축산법상 가축 중 18개 축종을 사육하는 농가 269천여호

☐ 예찰주기

구분	우제류 ^㉔	돼지	가금류 ^㉕		기타축종 ^㉖	비 고
			전업농 ^㉗ ·일반 ^㉘	소규모 ^㉙		
평시	월 1회	월 1회	월 1회	분기 1회	반기 1회	
특별방역	월 1회	주 1회	월 1회	분기 1회	반기 1회	

4) 가축전염병 별 긴급행동지침(SOP)의 예시는 다음과 같음.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농식품부 지침)

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이하 “방역본부”라 한다)

4.1.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주의’ 단계 방역조치 시행

4.2. 특별방역대책에 따른 예찰·검사 및 시료채취, 방역 지도·점검 등 조치 시행

4.2.1 가금농장에서 시료채취 거부 시에는 관할 지자체에 알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

개정안은 방역본부의 장 또한 입국신고 내용을 통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방역본부의 소관 사업 규정에 사육 중 가축에 대한 예찰 및 신고·상담 업무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전화 예찰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따라 전화 예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역본부

및 제6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치

4.3.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이행

4.4. 비상 상황 대비 상황실 운영 및 24시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4.5. 비상 상황 대비 초동대응팀 사전 편성, 방역 인력 및 물자 등 자원 실태 파악·관리

4.6. 가금농장에 대한 전화 예찰 강화(월 1회 이상)

4.6.1. 전화 예찰 미응답 시에는 3일 연속으로 전화 예찰을 실시하되 지속적으로 미응답할 경우 관련 내용을 관할 시·군·구에 통보

4.6.2. 해외여행 축산농장 및 관련 종사자 등에 대하여 입국일 기준 7일, 14일, 21일째 주기적 전화예찰 실시

4.7. 가상방역훈련(CPX) 실시(연 1회 이상)를 통해 발생 대비 초동대응 계획, 인력·장비 등 동원 계획 등 사전 점검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 (농식품부 지침)

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1) 특별방역대책상황실 운영

- 상황반 편성 및 긴급상황대비 비상연락망 재정보 등 비상 방역태세 확립

2) 시·군으로부터 의심축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 투입요청 시 신속히 투입하여 초동방역 임무 수행

3) 전화예찰 및 농장방역실태 점검 시 축산농장 방역준수사항 등 홍보

4) 우제류농장에 대한 전화예찰 강화

가) 특별관리대상 우제류사육농장에 대한 주 1회 이상 전화예찰 추진

- 특별관리대상이라 함은 기존 발생농장, 밀집사육지역, 백신구입 및 항체양성률이 저조한 농장 등을 말함

* 단, 농가가 전화 미응답시에는 3일 연속 전화예찰을 실시하되 지속적으로 미응답할 경우 농가를 방문하여 특이사항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관할 시·군에 통보

나) 해외여행 축산농장 및 관련종사자 등에 대한 입국일 기준 주기적 전화예찰 실시

5) 질병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우제류농장 순회교육

가) 과거 가축전염병 발생하였거나 가축사육 밀도가 높은 지역

나) 축산단체·기관의 가축질병·방역정책 교육지원

6) ~ 10) 생략

가 가축의 소유자등에 대한 성명 및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법적 근거
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안 제5조제8항 중 방역본부장의 전화예찰 업무에 관한 내용은
현행 제5조제8항의 소독업무와는 다른 업무이므로 별도의 항에서 규
정하는 등 법제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화 예찰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
히 할 필요가 있으나,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한 자 등을 대상으
로 실시하는 전화 예찰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 근거도 추가하고,
이 경우 하위법령 개정을 고려하여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
과한 날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안은 전화 예찰에 대한 시행 근거만 규
정하고 있을 뿐 전화 예찰에 필요한 가축 소유자등의 개인정보 수집
· 이용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24

1. 전화예찰 사업 개요

- 축산농가 상담·예찰센터는 2011년부터 가축전염병 조기검색 및 방역수칙 홍보 등을 위해 축산농가에게 전화(알림톡)로 예찰, 상담, 예찰관련 지원(행정)업무 등을 추진

※ 사업추진 근거 : 2025년 가축방역 사업 실시요령(농식품부 지침) 제3장 가축위생방역지원 사업

- 전화(알림톡) 예찰은 전국 9개 도본부 및 43개 사무소에서 203명이 축·품종 및 사육규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시 상황 전달, 조사 등의 조치로 전염병 확산 방지에 기여

2. 전화예찰 사업 대상

- 축산법상 가축 중 18개 축종을 사육하는 농가 269천여호

3. 예찰주기

구분	우제류 ^㉔	돼지	가금류 ^㉔		기타축종 ^㉔	비 고
			전업농 ^㉔ ·일반 ^㉔	소규모 ^㉔		
평시	월 1회	월 1회	월 1회	분기 1회	반기 1회	
특별방역	월 1회	주 1회	월 1회	분기 1회	반기 1회	

4. 예찰방법

- 가축 사육농가에 대해 주기 내 1회 이상 예찰(전화·문자·알림톡 등) 실시
- ※ 예찰에 대한 질의사항은 「전화예찰 매뉴얼」(방역본부 사업지침)을 기본으로 하되, 농식품부 방역정책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가축전염병 발생시 10km 방역대 중 예찰지역에 대해 SOP(긴급행동요령, 농식품부 지침)에 따라 주기적으로 예찰
→ 결과는 지자체 및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과 공유

구분	관리지역 (발생농장 ~ 500m 이내)	보호지역 (500m 초과 ~ 3km 이내)	예찰지역 (3km 초과 ~ 10km 이내)	방역대 외 예찰 필요지역
담당	지자체		방역본부	

- 예찰 결과에 이상이 있거나, 주기 내 3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방역사가 1차 조치, 조치 후 개선이 안 될 시 관할 시·군·구 또는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에 명단 제출

※ 임상 이상(또는 미응답) 관리 : 예찰 최대 3회 ⇒ 방역사 조치 ⇒ 지자체 조치

5. 예찰수단

- (전화) 예찰센터에서 예찰직이 축산농가에게 전화를 걸어 예찰 실시
- (알림톡) 카카오톡으로 진단표를 발송하여 축주가 스스로 예찰 실시
- (보이스봇) 예찰센터에서 AI가 축산농가에 전화를 걸어 예찰 실시

※ 보이스봇은 '24. 3. 25. 시행한 신사업으로 현재 시범운영 중

6. 전화예찰 실적(2024년도)

□ 전화예찰 실적 : 총3,349,663건

(단위 : 건, 기준 : 2024. 12. 31.)

구분	합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3,349,663	377,950	277,656	291,421	493,810	352,566	468,681	614,062	440,536	32,981
정기	3,230,736	350,640	270,000	283,303	476,923	342,276	453,380	594,766	428,362	31,086
해외	118,927	27,310	7,656	8,118	16,887	10,290	15,301	19,296	12,174	1,895

□ 임상증상별 검색현황 : 35,057건

(단위 : 건, 기준 : 2024. 12. 31.)

구분	합계	설사	폐사	식욕감퇴	발열	유사산	기침	산란율저하	기타
합계	35,057	4,744	12,342	12,282	32	991	268	1,910	2,488

□ 질병검색 실적 : 18건(1종 2건, 2종 7건, 3종 9건), 기타 1,142건

(단위 : 건, 기준 : 2024. 12. 31.)

구분	계	전화예찰					알림톡				
		소계	1종	2종	3종	기타	소계	1종	2종	3종	기타
계	1,160	1,060	1 [*]	6	8	1,045	100	1 ^{**}	1	1	97

□ 농장정보 현행화 추진실적 : 1,826,002건

(단위 : 건, 기준 : 2024. 12. 31.)

구분	계	운영상태	사육두수	축주명	주소	축종
계	1,826,002	46,544	1,775,342	968	900	2,248

7. 자가진단 알림톡 추진 실적

□ 추진대상 : 18개 축종 95,884호('24. 1. 15. 방역본부 전산시스템(팜스) 기준

※ 대상은 조회일 기준이며, 농장정보 현행화에 따라 대상이 실시간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추진실적

- 추진기간(누적) : '24. 1. 1. ~ '24. 12. 31.
- 응답률 : 52.8%(1,306,490호 발송, 689,772호 응답)

(단위 : 건, %, 기준 : 2024. 12. 31.)

구분	계	우제류				가금류				기타축종		
		소	돼지	염소	기타3종	닭	오리	메추리	기타6종	꿀벌	말	토끼
발송	1,306,490	911,750	233,537	11,167	5,286	121,206	14,846	1,921	1,572	3,975	957	283
응답	689,772	424,620	172,709	5,912	2,444	72,269	8,507	1,421	853	812	240	86
응답률	52.8	46.6	74.0	52.9	46.2	59.6	57.3	74.0	54.3	20.4	25.1	30.4

8. AI 보이스봇 사업 추진실적

□ 추진대상 : 해외여행자 특별예찰

- 축산관계자(가축의 소유자 및 수의사, 사료판매업자 등)가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농장출입 여부 및 소독실시 여부 등을 문의하는 예찰

□ 추진실적

- 추진기간(누적) : '24. 3. 25. ~ '24. 12. 31.
- 응답률 : 77.6%(49,683명 발송, 38,536명 응답)

(단위 : 건, 기준 : 2024. 12. 31.)

구분	합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발송	49,683	13,139	3,978	3,380	6,871	8,521	3,868	8,536	503	887
응답	38,536	9,771	3,109	2,567	5,515	6,843	2,791	6,914	382	644
응답률	77.6%	74.4%	78.2%	75.9%	80.3%	80.3%	72.2%	81.0%	75.9%	72.6%

- 보이스봇 활용비율

(단위 : 건, 기준 : 2024. 12. 31.)

구분	계		전화 및 알림톡		보이스봇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계	118,927	100.0%	80,391	67.6%	38,536	32.4%